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345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 1. C

2. D

변론 종결 2020. 9. 23.

판결 선고 2020. 11. 11.

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단210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2,79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9. 1.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19행까지(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1억 2,0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원고 부담분 31,177,203원²⁾을 공제하면 38,822,797원(= 1억 2,000만 원 - 5,000만 원 - 31,177,203원)이 남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38,822,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서상 원고에게 분배될 금액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중 1억 원을 분배하기로 하되(이 사건 약정서 제4항), 추가로 원고가 21년 동안 부담한 소요경비를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면서(이 사건 약정서 제3항),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분배대금의 합계액을 1억 2,000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음은(이 사건 약정서 제7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될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2) 양도소득세 등 공제

가) 변제금 5,000만 원

원고가 위 1억 2,000만 원에서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5,000만 원이 위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도소득세 중 원고 부담액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8. 6. 1.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2,651,820원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서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1/4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원고로서는, 피고 B가 위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202,651,820원 중 위 분배 지분(1/4)에 상응하는 50,662,955원(= 202,651,820원 / 4)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50,662,955원이 위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은 H를 포함하여 5명이고,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의 변호사비, 법무사비, F 소송비 합계 1억 원을 피고 B가 편취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액 중 원고가 부담할 지분이 1/6.53)금액은 31,177,203원(= 202,651,820원 /

6.5))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망인의 상속인들은 H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명(원고, 피고 B, F, I)임이 이 사건 약정서 제4항의 문언의 기재 내용상 명백하고, 피고 B가 위 변호사비 등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9,337,045원(= 1억 2,000만 원 - 5,000만 원 -50,662,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 B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배관진, 판사 강민수

1)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취를 감축하였는바, 청구취지 역시 이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선행한다.

2) 그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위 매매대금 중 원고 분배액 1억 원 / 6억 5,000만 원[= 위 매매대금 분배액 합계 5억 5,000만 원(= 원고, 피고 B, F, I 각 1억 원 + 피고 H 1억 5,000만 원) + 피고 B 편취금액 1억 원(= 변호사비 1,000만 원 + 법무사비 4,000만 원 + F 소송비5,000만 원)]